

보도자료

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5. 12. 5.
- 제공자 : 농림부 경영인력과
- 과 장 : 민 연 태
- 사무관 : 김 휴 현
- 전 화 : 500-1684

이 자료는 2005년 12월 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림부,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폭 개선

- 컨설팅 업체 공모·인증제 시행, 농가 선정기준 강화, 소규모 농가에 공동 컨설팅 도입,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실시

□ 새해부터 농림부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크게 바뀐다.

- 농림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부작용으로 대두됐던 능력부족 업체 난립, 특정분야 편중, 나눠주기식 배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 농림부 공모·인증, 지방자치단체 자체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·시행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,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주로 가축 위생방역 분야 등 접근이 용이한 생산기술 지도에 집중됐고, 사료 등 기자재 업체가 컨설팅 업체에서 자사 제품 판매 목적으로 컨설팅을 이용했다는 등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.

□ 이에 따라, 농림부는 농민단체, 학계, 농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50% 이상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해 경영, 마케팅, 브랜딩 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능력 있는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.

○ 이렇게 개편되면 컨설팅 업체는 내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, 6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확보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컨설팅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며,

○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학·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업체, 권역별 특화 업체, 특정 기술 분야로 특화한 특수컨설팅 업체를 우대 선발한다.

* 사료·기자재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,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

○ 인증된 업체도 담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거나 농림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며, 2년마다 사후 평가를 받아 탈락 여부가 결정된다.

□ 컨설팅 농가는 컨설팅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행 우선순위 선정방식이 아닌 신청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심사해서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제도화한다.

* 현행 우선순위(번호순으로 적용) : ①인터넷 활용 ②컨설팅 교육수료 ③ 후계농업인, 신지식농업인 ④정책자금 수혜농가 ⑤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은 농가 ⑥ 컨설팅 실적 우수농가 ⑦ 경영규모, 수출실적

- 다만, 농업인의 정부 정책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정책 교육 이수자, 자연순환농업 실천농가(퇴·액비 시용)는 우대한다.
- 특히, 소규모 농가단위는 실질적 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감안, 지원 대상 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농가는 동종 농가 3호 이상 모여 공동컨설팅을 요청하면 지원할 계획이다.
- * 지원대상 농가 규모 : 원예·특작 3,000㎡이상, 가공 매출액 2억원 이상, 한우 젖소 50두 이상, 돼지 1천두 이상, 양계 2만수 이상
- 또한, 단일 품목(예 : 축산)에 50% 이상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 품목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, 지역농업클러스터, 농촌관광, 친환경(유기농업)분야 및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.
- 한편, 연속지원 농가는 3년차부터 자부담율(30%→50%)을 높여 컨설팅이 꼭 필요한 농가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광역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자체 컨설팅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자치단체 단위에서 체계적인 컨설팅 추진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.
- 또한, 시·도 공무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수시로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자금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 점검토록 하여 컨설팅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.

농림부 공고 2005-143호

200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공모·인증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
2005. 11. 29

농림부장관

농업경영컨설팅 업체 공모·인증 계획

1. 목적

- 우수 컨설팅 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농업경영컨설팅의 질 향상 추구
-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·인증하여 전문화·규모화 도모

2. 신청자격

-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인 이상 전문인력(업체전속기준)을 보유한 업체
-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 목적에 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
- 전문인력 단계적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'07년에 8인 이상 확보 가능한 업체
- 전문인력은 다른 컨설팅 업체에 겸직 금지 원칙
- 전문인력 : ①회계·재무 ②경영 ③마케팅 ④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(축산), 토양(경종), 전기(시설, 축산), 기타 품목별 필수 등

- 전문인력 자격기준 :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(국가기술 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)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-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
 -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 - 신지식 농업인 및 농업전문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
□ 인증우대

-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, 대학·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업체
 - * 다만, 단일 내용으로 여러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외
: 예) 가축병원이 연합하여 질병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등
- 전국 단위 컨설팅 업체로서 지사(branch) 구성이 활발한 업체
-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업인이 컨설팅 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내용을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자세히 프로그램을 구성한 업체

□ 인증제외 대상(컨설턴드 자격에도 적용)

- 부적절한 거래, 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례가 있는 자(업체)
-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세금 체납중인 자(업체)
- 컨설팅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농가 등에 피해를 준 사례가 있는 자(업체)

3. 대상

경영·마케팅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업체

- 컨설팅 분야 : ①원예·특작, ②가공, ③한우, ④낙농, ⑤양돈, ⑥양계, ⑦공동마케팅조직, 산지유통전문조직, 산지유통센터, ⑧미곡종합처리장, ⑨쌀 전업농, ⑩지역농업클러스터, ⑪농촌관광, ⑫친환경(유기)농업, ⑬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, ⑭종합, ⑮특수분야

- 사료·기자재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

*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즉시 취소

인증우대

-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위해 권역별 특화 업체

- 전국단위 특수 분야 컨설팅(예 : 낙농생산관리) 실시 업체

* 이 경우에도 전문 인력은 6인 이상으로 하고, 일반분야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음

4. 인증절차 및 방법

- 절차 : 상기 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 → 적격여부 심사(서류) → 통과 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 등 사업설명을 듣고 컨설팅수행 능력 판단 →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에 대해 인증

-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: 농림부 관계 공무원, 관련 기관·단체 관계자, 품목단체, 학계,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(민간 50% 이상)으로 구성

- 특정 품목에 한정되는 경우 농림부 품목담당과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 인증 가능(농림부 경영인력과에서 총괄 조정)
-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사전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사전 준비를 위해 평가기준 예시는 공개하나,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05. 11. 30~12. 23
- 접수처 :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경영인력과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-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최종일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
- 신청서류 : ①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, ②컨설팅 전문 인력 보유 현황, ③주요 컨설팅 실적 기술서, ④ 사업자등록증, ⑤법인등기부등본, ⑥회사소개서, ⑦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약정서, ⑧외부 인력풀 운영의 경우 인력풀 대상자 참여 동의서, ⑨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

6. 인증업체에 대한 조치

- 인증업체에 대해 농림부 인증서 교부
- 인증업체 명단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별도의 리후렛을 제작하여 시·도(시·군) 등에 배부

[별지 제1호 서식]

농업경영 컨설팅 업체 인증 신청서

(컨설팅업체 작성용)

업 체 명				대 표 자 명		
사업자등록번호				주민등록번호		
주 소						
설 립 일				'05컨설팅계약액		
전 화				F A X		
홈페이지				E-mail		
컨설팅 분야						
구 분	박 사	석 사	학 사	유자격자	유관기관· 업체 5년 이상근무자	총 계
내부전문인력(명)						
외부전문인력(명)						
주요 시설·장비	명칭 및 수량			용 도		

이상과 같이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로 인증 받고자 신청합니다.

신청 일 : 년 월 일

업체명 :

대 표 자 : (인)

- 별첨 :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2.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
 3. 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 1부
 4. 주요 컨설팅실적 1부.

[별지 제1-1호 서식]

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

(컨설팅업체 작성용)

년 월 일 기준

성명 (주민등록번호)	주소 (연락처)	외부인력 소속	자격및학위 (구체적으로)	컨설팅기능분야 (구체적으로)	컨설팅 경력	전담 지역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-	()				년 월	

- 주)1. '자격 및 학위'에는 해당 분야 기관·업체 근무경력 포함
 2.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, 전담 시·도를 기재
 3. 기관·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
 4. 소속 : 내부인력은 '내부'로, 외부인력은 '소속'을 기재
 5.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'참가동의서'를 첨부

[별지 제1-2호 서식]

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

(컨설팅업체 작성용)

컨설팅기간	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	컨설팅 계약액 (백만원)	컨설팅내용	성 과 (구체적)	컨설팅팀	협력기관 및 컨설턴트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년 ~ 년	성명				내부()명	
	주소					
	전화					

- ※ 1. 별첨 :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
 2.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

< 참고 : 회사소개서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>

- 미리 제시된 서식은 없으며, 회사소개서는 회사소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되,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작성
- 제안서 또한 별도의 서식이 없으므로 회사소개서 말단에 작성
-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,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
-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붙임 자료로 작성
-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, “.....를 제공할 수도 있다”, “.....이 가능하다”, “.....을 고려하고 있다”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

농업경영컨설팅사업 개선방안

2005. 11. 25

농업구조정책국
경영인력과

= 목 차 =

I. 현황 및 문제점	1
1. 컨설팅 사업 현황	1
2. 현행 컨설팅의 문제점	2
II.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중장기 추진 방향	4
III. '0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개선방안	5
1. 기본방향	5
2. 컨설팅업체 인증Pool제 도입	7
3. 컨설팅 농가 선정기준 강화 및 체계 확립	9
4. 컨설팅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	12
5. 브랜드형 공동컨설팅 사업 추진	12
6. 기타 제도개선 추진사항	13
7. 교육계획	14

I. 현황 및 문제점

1. 컨설팅 사업 현황

□ 사업내용 : 컨설팅 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컨설팅 소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 지원

○ 국고 50%, 지방비 20, 자부담 30

*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자부담 축소('04년 : 국고 30, 지방비 20, 자부담 50%)

○ 시·군에서 자부담 투입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해당 비용을 컨설팅을 실시한 업체에게 지급

○ 지원방법 : 농가(신청) → 시·군(농발위심의회에서 우선 순위 결정) → 시·도에 보고 → 농림부에 제출 → (농림부) 시도별 예산 배분 → (시·군) 시군별 배분 → 농가와 컨설팅업체 계약 체결

□ 지원대상 : 원예·특작, 축산분야 농가,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, APC(산지유통센터), RPC(미곡종합처리장), 쌀전업농

* '05년도에 APC, RPC, 쌀전업농 신규 추가

□ 지원한도 : 개인농가 15백만원 미만, 법인·가공업체 30 미만

* '05년부터 지원단가 상향조정 : ('04) 개인농가 3~10, 법인·가공업체 5~20백만원

○ 경영체당 평균예산 반영 단가 : 8백만원

<예산지원 현황>

(단위 : 백만원, 개소)

구분	'99	'03	'04	'05	'06예산안			
					일반	브랜드형 시범사업	홍보	합계
사업량	220	847	870	1,000	1,200	16	-	1,216
사업비	1,710	5,696	6,550	8,000	9,600	640	80	10,320
국고	671	1,709	1,965	4,000	4,800	320	80	5,200

2. 현행 컨설팅의 문제점

- 분야별 컨설팅이 가능하여 특정분야 편중 및 실효성 저하
 - 재무회계(필수)+선택분야(1개)로 분야별 컨설팅 실시가 가능함에 따라 주로 가축위생방역 등 접근이 용이한 생산기술 지도에 치중
 - 가축질병관리에 관한 농가수요가 많고, 컨설팅업체가 갖춰야 할 조건구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소규모 동물병원이 많이 선정

<'04년 컨설팅 지원 및 업체 현황>

구 분	시설·원예분야	축산분야	가공분야	종합 기타	계
○농업경영체(%)	132(14.4)	756(82.4)	29(3.2)	-	917(100.0)
○컨설팅업체(%)	15(20.3)	39(52.7)	12(16.2)	8(10.8)	74(100.0)

* 축산분야중 동물병원이 16개소로 41%(전체대비 21.6%) 차지

* 컨설팅업체 중 축산업체 비중이 '03년 84%에 비해 감소되었으나, 여전히 다수를 차지

- 사료 등 기자재 컨설팅업체에서 자사 제품 판매목적으로 실시하는 컨설팅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여론
- 전문컨설팅업체 부족으로 비전문인력이 타분야까지 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진단오류 발생 가능성도 존재

□ 농가별 경영평가의 어려움으로 실질적 컨설팅에 한계

- 컨설팅에 필요한 농가의 기술·경영상태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구비한 농가가 거의 없어 실질적 컨설팅에 애로
 - 우리나라 농가는 태생적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실상 진정한 경영컨설팅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
- 컨설팅 결과 도출된 의견을 농가가 수용하는 데도 시설개선 비용조달 등 많은 제약조건으로 어려움이 있음

□ 농가와 컨설팅업체 담합으로 보조금 변칙집행 및 컨설팅 질 저하

- 농가가 컨설팅업체를 선정할 때 『자부담을 투입하지 않아도 투입한 것처럼 처리하겠다』는 농가의 요구조건 수용 여부에 따라 컨설팅업체가 결정되는 현상 발생

* 농가는 자부담 없이 계약하는 것은 업체에게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고, 업체 또한 농가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 → 심지어 농가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컨설팅업체가 수주물량도 많다는 여론

- 사료회사 계열사나 가축병원 등이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농가가 지불해야 할 축산기자재 값으로 자부담을 대체하는 경우도 발생

- 결국, 컨설팅업체는 자신들이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는 수준에 맞도록 컨설팅을 실시함에 따라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

□ 지자체에서 컨설팅 수요농가 선정시 형식적 심사로 인하여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 선정

-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사장치가 마련되지 않아, 비전문가인 일선 행정공무원이 단편적으로 선정

- 실제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하기보다는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요구 농가수를 기준으로 ‘나뉘주기식’ 배분

- 지원금액도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산정

* 예) 3백만원 수준 → 5백만원 책정, 5백만원 수준 → 3백만원 책정

- 농가도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보조금 수혜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

* 예) 이웃농가는 정부보조금으로 가축병원에서 무료로 예방주사 놔준다.

II. 농업경영컨설팅 중장기 추진방향

◇ 1단계 : 농업경영컨설팅의 기반확충을 위한 지원('06~'08)

- 농가위주에서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단계적 전환
 - 소규모농가는 공동컨설팅 단위(3농가 이상)를 조직토록 유도
 - 농축산물 브랜드 컨설팅(브랜드 경영체)사업 실시
- 우수 컨설팅업체를 집중 육성하여 규모화와 전문화 도모
 - 능력 있는 업체를 공모·인증하고, 농가는 희망업체 선택



< 사업주체 대전환 : 시·도 ⇒ 품목단체 >

- 역량강화 과정(농업인교육 주관)을 거쳐 '07부터 시행 추진
 - 농업인의 요구를 잘 아는 품목단체가 사업을 주관토록 하여 농정참여 기회제고 및 자율화·전문화 도모

◇ 2단계 : 컨설팅 자율 추진 기반 조성('09~'11)

- 정부지원은 줄이고 자조금과 농가 자부담으로 컨설팅 시행
 - 농가와 품목단체가 협의하여 자율적인 사업 추진 유도
- 자율적인 농업경영컨설팅 시장형성 및 시장규모 확대 유인

◇ 3단계 :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의 자율화(상품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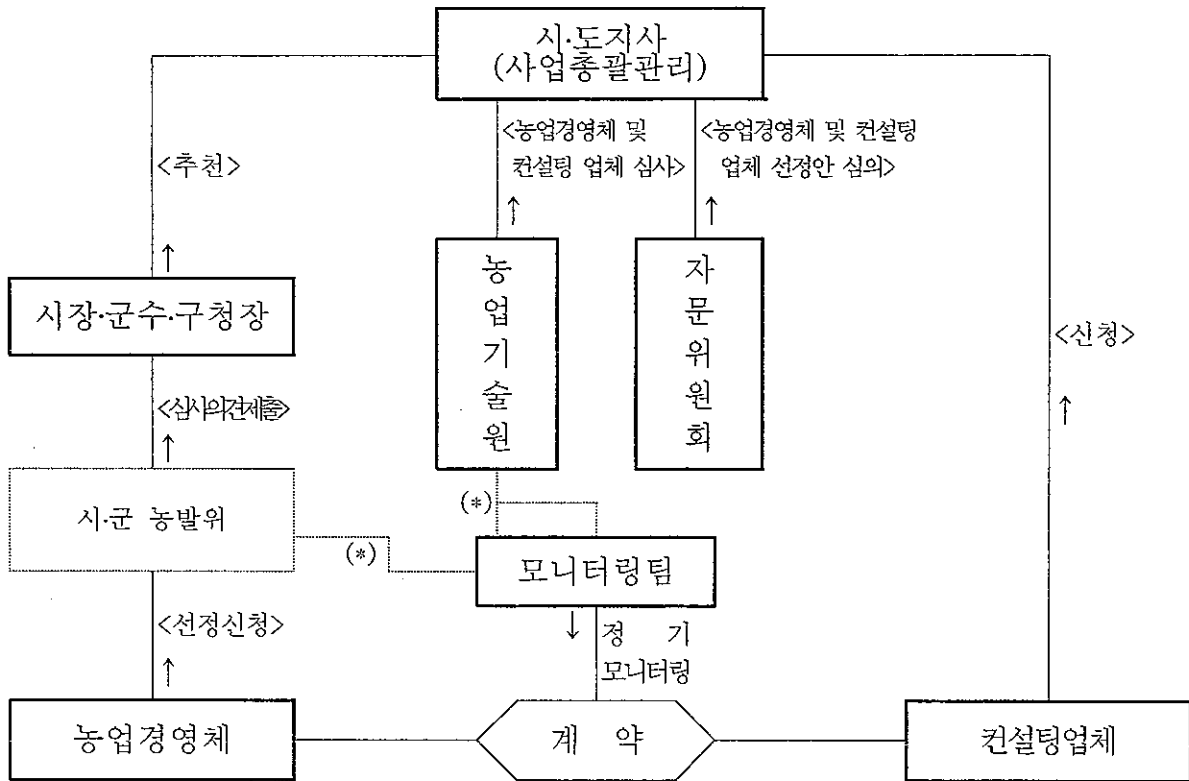
- 농업경영컨설팅 시장형성을 바탕으로 컨설팅업체와 컨설팅 농가간 컨설팅 계약 실시
 - '컨설팅 = 소득증가'의 개념 정착
- 정부와 품목단체는 제도개선, 정보제공 등 간접지원 역할 수행

Ⅲ. '06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개선방안

1. 기본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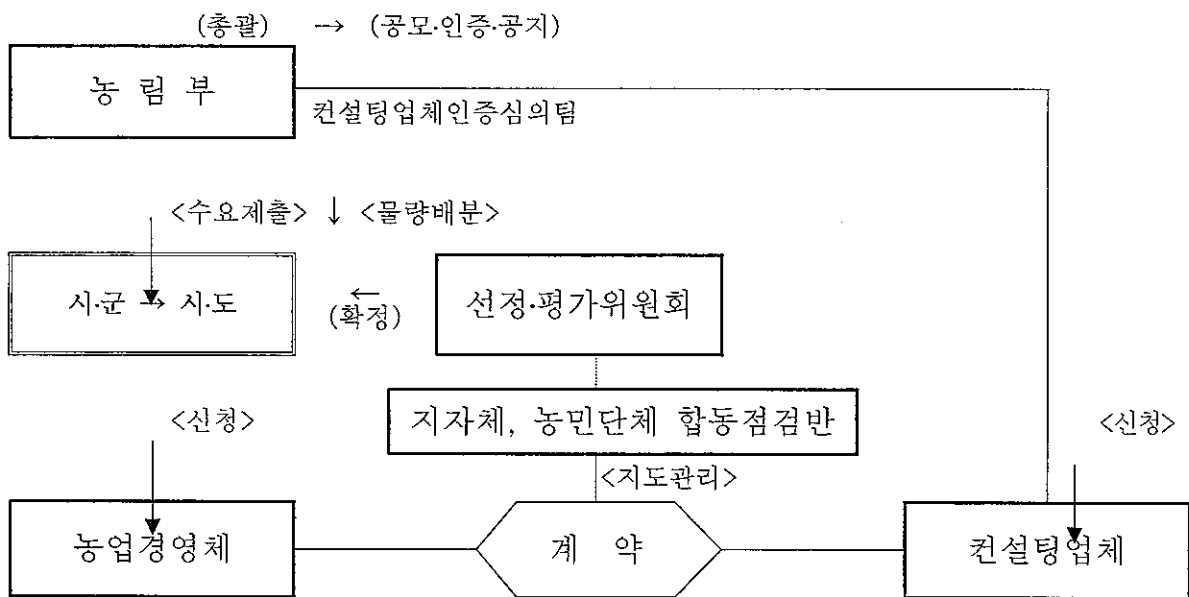
- 컨설팅업체를 중앙(농림부)에서 인증·공지하고, 사후평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능력향상 및 규모화·전문화 추진
 -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(지자체) → 컨설팅 실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·인증(농림부)
 - 품목단체, 학계, 전문가 등으로 인증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- 대상농가 선정기준 강화를 통해 컨설팅사업 내실화
 - 컨설팅이 절실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
 - 선정 우선순위제도를 폐지하고 컨설팅 신청내용 중심 심사
 - 대상농가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고, 소규모 농가는 공동 컨설팅 조직(3농가 이상)을 구성토록 유도하여 지원
 - 단계적으로 공동마케팅, 산지전문조직 등으로 전환
 - 시·도별 농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사업(17개소) 실시
 - 품목별 편중방지 및 생산위주 컨설팅 지양을 위한 장치 마련
-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 추진을 통해 자율성 부여 및 책임성 강화
 - 시·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,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 협의 후 시행
 - 브랜드 컨설팅 등 시·도 역점 컨설팅 기획사업에 대한 지원
 - 지자체 공무원 및 농민단체 합동으로 현장 점검 주기적 실시
- 연속지원 농가에 대한 국고 보조율 차등적용 등 수익자 부담 강화

< 현 행 >



(*) 전문기술적 사후관리를 담당할 모니터링팀은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 및 외부전문가를 위촉, 구성

< 개 편 후 >



2. 컨설팅업체 인증 Pool제 도입

- 우수 컨설팅 업체 집중 육성을 통한 컨설팅의 질 향상 도모
 - 현재는 컨설팅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신청에 의해 시·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애로
 - * 일각에서 농업계 전반에 검증받지 않은 컨설팅회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우려 표명
 - * 신청자격 : ①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②전문인력 4인 이상(공인회계사 1인 포함) 보유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사업을 운영중인 업체
 - 능력 위주로 업체를 공모·인증하여 전문화 및 규모화 도모
- 전문인력 확보와 컨설팅 기자재 보유상태 등을 기준으로 컨설팅 역량을 판단하여 적격업체 인증
 -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기간까지 일정 전문인력(업체 전속기준)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
 - 전문인력 확보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 상향조정
: (현행) 4인 이상 → ('06년) 6인 이상 → ('07년) 8인 이상
 - * 전문인력 : ①회계·재무 ②경영 ③마케팅 ④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(축산), 토양(경종), 전기, 기타 품목별 필수 등
 -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, 대학·연구소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한 업체 우대
 - * 대학의 컨설팅 능력 배양을 위해 참여 촉진방안 강구
 - 신청업체에 대해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에서 절대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에 대해 인증
 - 서류로 적격여부를 1차 심사하고, 통과한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,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컨설팅 수행 능력 판단
 - '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'는 관계공무원, 관련 기관·단체관계자, 품목단체, 학계,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(민간 50% 이상)으로 구성·운영
 - * 특정 품목에 한정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림부 품목 담당과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하는 방안 동시 시행

< 컨설팅업체 평가기준(예) >

구분	분류	평가기준
서류심사 (100점 만점)	업체능력 (15점)	○조직안전성(5), 컨설팅 전문성(10))
	컨설팅제안 (25점)	○컨설팅이해(5), 컨설팅목적(5), 컨설팅과제(5), 컨설팅준비(10)
	컨설팅실적 (30점)	○매출실적(5), 회계재무실적(10), 경영관리 컨설팅실적(5), 생산관리 컨설팅실적(5), 브랜드·마케팅 컨설팅실적(5),
	컨설팅인력 (30점)	○컨설턴트 총인원(5), 컨설턴트 전업비율(5), 컨설턴트경력(5) 컨설턴트전문성(10), 외부전문가(5)
프리젠테이션 (30점 만점)	업체능력	○컨설팅 전문성, 조직 및 실적
	제안서충실도	○사업의 이해도, 추진전략, 기타 사전준비 정도
	성공가능성	○컨설팅 수행의지

- 경영·마케팅까지 종합컨설팅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
 -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위해 권역별 특화 업체 인증 우대
 - 사료·기자재회사의 계열사 등은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,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
- 선정된 컨설팅업체에 대하여 농림부 인증서 발급
 - 인증업체 명단을 농림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별도의 리후렛을 제작하여 시도 등에 배부
- 업체의 실적을 평가하여 인증 지속여부 판단
 - 부정행위 적발, 사업시행지침(의무사항) 미준수시 즉시 인증 취소
 -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부진, 민원발생, 평가점수 하위 업체 등에 대해 인증 취소

3. 컨설팅 농가 선정기준 강화 및 체계 확립

□ 컨설팅 농가의 계획서 작성·제출 의무화 및 심사 강화

-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의 내용을 직접 기술하여 시·군에 제출
 -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여 수동적 컨설팅 참여 지양
 - * 컨설팅업체와 농가의 사전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선정 완료 후 컨설팅업체 선정 및 명단 공개
- 시·군에서는 관련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심사팀을 구성,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시·도에 추천(1차 선정)
 - 시·군 농업관련 부서의 전문직 공무원 등이 대상자를 선정·추천하도록 개선(현행 : 농발위,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)
 - 컨설팅 신청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되, 조건에 적합하며 컨설팅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선정
 - 공동마케팅, 산지전문조직 등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하고, 소규모 개별농가는 공동컨설팅 단위 조직(3농가 이상) 구성 유도
- 시·도는 시·군에서 추천한 농가의 컨설팅 필요성을 검토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, 대상자 확정(2차 선정)
 - 시·도의 품목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농가 선정·평가팀을 설치하고, 농가 선정 및 사후평가 실시 등의 임무 수행
 - 컨설팅 농가 선정·평가팀에서는 동종 컨설팅 농가를 선별하여 공동 컨설팅 조직 결성을 유도하고, 시·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추진방향 설정 등의 임무 수행

- 컨설팅농가 규모화를 위해 대상 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
 - 소규모 농가 단위는 실질적 경영컨설팅이 어려워 실효성이 적은 점을 보완
 - 원예·특작 : 3,000m²이상, 가공 : 매출액 2억원 이상, 한우·젓소 : 50두 이상, 돼지 : 1천두 이상, 양계 : 2만수 이상
 - 소규모 농가는 농진청의 공공컨설팅에서 담당토록 유도하거나, 공동컨설팅 단위 조직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

- 지역별·품목별 특성에 맞는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우선순위제도를 폐지하고 참조사항으로 존치
 - 현행 우선순위제도는 상대적으로 컨설팅이 절실하지 않는 우수 농가가 선정되는 등 불합리성 내재
 - * 현행 우선순위(번호순으로 적용) : ①인터넷 활용 ②컨설팅 교육수료 ③ 후계농업인, 신지식농업인 ④정책자금 수혜농가 ⑤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은 농가 ⑥ 컨설팅 실적 우수농가 ⑦ 경영규모, 수출실적
 - 예) 수출관련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a)정책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수출실적이 높은 업체가 ⑥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수출실적이 낮은 농가보다 우선순위가 늦어 탈락하는 모순 발생
 - 우선순위제도는 폐지하되, 우선순위 항목을 점수화하여 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
 - 다만, 농업인 정책교육 이수자 선정우대 등 농업인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지속 강구
 - 자연순환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퇴·액비 시용 농가 및 브랜드경영체에 대해 우선 지원 등

□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절차 개선

- 각 시·도에서는 시·군의 추천 내용과 농림부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방향을 토대로 시·도별 추진계획 수립
 - 경영, 마케팅, 브랜드 컨설팅에 우선 배정하고, 생산위주는 공동 컨설팅 단위를 구성토록 유도하여 배분
 - *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설팅 지원 유도
 - 품목별 편중 방지를 위해 전체사업비 대비 단일 품목(예 : 축산) 50%를 초과하여 배정되지 않도록 상한 설정
 - 브랜드 컨설팅 등 시·도 특성에 부합하는 기획사업 추진(도별 1개소)
 - * 예) 지역 대표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
 - 농림부 품목 담당과와 사전 협의를 통해 농림부 사업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

< 사업추진절차 >

- ① 농림부는 각 시·도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근간으로 지역별,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사업비 배분
- ② 각 시·도는 최종 확정·배정된 사업비를 중심으로 당초 사업계획 취지대로 시·군에 배분
- ③ 시·군은 배정된 사업비와 배정 원칙을 기준으로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시·도에 제출
- ④ 시·도에서는 시·군 제출안을 종합 조정하여 컨설팅 농가 선정·평가팀에 상정한 후 최종 확정
- ⑤ 사업추진 결과(컨설팅업체 사업수행 보고서 포함)도 시·도 컨설팅 농가 선정·평가팀에서 확정된 후 농림부에 제출

4. 컨설팅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- 지자체 공무원 및 농민단체 합동으로 주기적 사후점검 실시
 - 시·도(시·군) 담당 공무원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, 컨설팅 농가를 샘플링하여 점검·지도 실시
 -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 지도,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 점검 등
- 자부담 미 투입 등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
 - 3농가 이상 공동컨설팅 조직 구성 및 사료·기자재 업체 계열사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통해 자부담 미 투입 요인 사전 제거
 - 자부담 미 투입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가 컨설팅 비용 전액을 자부담으로 지급토록 지원 자금 회수

5. 농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사업 추진

- 시·도 주관으로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를 측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
 - 시·도가 선정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민간전문상담원이나 전문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
 - 지원대상 : 브랜드경영체(지원기준 : 국고50%, 자부담 50%)
 - * 필요시 자부담 범위 내에서 지방비 투입 가능
 - '06년에 17개 브랜드 경영체(도별 2개, 제주1)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
- 각도에서 대상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,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·지원
 - 필요시 각도 자체적으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선정 평가 실시

6. 기타 제도개선 추진사항

-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대상 품목 확대
 - 현행 : ①원예·특작 농가(법인) ②축산농가(법인) ③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, ④공동마케팅 조직, 산지유통전문조직, APC(산지유통센터), ⑤RPC(미곡종합처리장), ⑥ 쌀전업농
 - 추가 : 지역농업클러스터, 농촌관광, 친환경(유기)농업 분야
- 품목별·경영규모별·컨설팅 내용별 지원금액 기준 마련
 - 현행 : 시·군에서 공급업체로부터 가계약서를 제출받아 지원금액을 임의로 결정하고 쌍방에 통지
 - * 지원금액 결정방법 : 농가성격, 약정된 컨설팅 내용, 계약금액을 감안
 - 문제점 : 지원금액 기준 부재로 경영규모 및 컨설팅 내용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컨설팅 품질저하
 - 지원상한(농가 : 15백만원, 법인·가공업체 30)은 있으나 유명무실
 - 개선방안 : 품목별, 경영규모별, 컨설팅 내용별 컨설팅 소요비용 표준 메뉴얼을 마련하여 제공 필요
 - 컨설팅 소요비용 메뉴얼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 - * '06년에는 각 시·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뉴얼 설정·제공하고 '07부터 적용
- 사업시행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조정
 - (현행) 당년 7월~익년 6월 → (개선) 당년 1월~12월
 - 문제점 :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있어 행정집중력 약화
- 컨설팅 업체 및 농가에 대한 사전 집합교육 실시
 - 매년 사업 실시 전에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연수원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시

- 연속지원 농가에 대한 국고 보조율 차등적용 및 우수 졸업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우대를 통해 자율성 강화
 - 자부담 확대 : (1년차, 2년차) 30 → (3년차) 50%
 - 국 고 : (1년차, 2년차) 50% → (3년차) 40
 - 지방비 : 20 → 10
 - 컨설팅 졸업농가에 대해 각종 정책지원 우대 방안 강구
 - 졸업농가 중 우수 농가를 컨설팅 교관요원이나 후견인으로 활용

7. 교육계획

- 시·도, 시·군 담당 공무원 릴레이 교육 및 연찬회 실시
 - 시·도 담당자(농업연수원, 11.28) → 시·군 담당자 (시·도 담당자, 12월 중) → 농업인 교육(시·군 담당자, 12월중)
 - 농업인 배포용 리후렛 제작·배포(소요비용 : 20백만원 이내)
 - 시·도(시·군) 컨설팅 담당 연찬회 : 1박2일('06.1월 중)
- 컨설팅 지원단가 표준메뉴얼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30백만원)
 - '06년 표준메뉴얼 설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 대상 공모·시상
 - 최우수(1) 500천원, 우수(2) 300천원, 가작(3) 200천원